

2023년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4.(월), 14:00 ~ 15:30
- 장 소: 남양주 동화컬처빌리지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심의위원: 김경숙 심의위원장, 강태욱 위원, 권현영 위원, 김성주 위원, 김원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이성엽 위원, 홍지만 위원
 - ※ 권현영 위원은 의결안건 2호부터 참석함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2-3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1분기 주요 심의 현황
 - ※ 안건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 제1호: 2023년도 1분기 주요 심의 현황

- 주요내용

- 2023년도 1분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2. 의결안건

○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

- 전차 회의록(제2023-308회) 확인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계정 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의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며, 기타 의결안건은 위원명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3-18874호~18876호는 제2023-57회 제4분과위원회(2023. 3. 23.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PDF)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안임.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3-18874호~18876호는 저작권 침해에 이를 개연성은 있으나 미완성 내지는 미수에 그친 점, 판매게시물에 비해 위법성

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제2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주요내용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처의 설치를 심의위원회 규정에 명시하되 제3항에 의하여 해당 전담부서 또는 직원은 보호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사무처 조직 및 인사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회의결과

- 추후 개정안을 재정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본건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심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30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경숙 심의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5쪽~10쪽 위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각 의결안건 부분은 토의에 참여하여 발언한 위원명을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임. 계정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심의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계정 정지 의결안건을 제외한 의결안건 논의 부분에서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계정 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 논의 부분인 7쪽~1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1분기 주요 심의 현황

- 오진해 전문위원이 2023년도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각 출판사', 시정권고 이행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임.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김경숙 심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3-18874호~18876호는 권리자가 신고한 건 1건과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 2건 총 3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구입 희망하고 있는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PDF 삽니다'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여러 개의 특정 도서를 지정하여 불법복제물 구입을 희망하고 있음.
- 김경숙 심의위원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PDF를 '팝니다'가 아니라 '삽

니다'는 취지의 글로, 기존 심의대상이 되었던 불법복제물 거래 게시물과는 상이한 유형임. PDF를 판매하여 불법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시물과 달리, '삽니다'라는 내용의 경우에는 실제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지, 거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가 불명확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3-18874호~18876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만일 출판저작물이 아닌 뮤지컬·영화였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당장 전송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저는 약간 다른 견해임. 판매게시물의 경우는 해당 게시물 하나에 의해 수없이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음. 반면 '삽니다'의 경우 게시물 하나당 거래 하나에 그치게 됨. 불법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또한 '삽니다' 게시물이 구하는 복제물이 반드시 전부 불법인지도 의문임. A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판매게시물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A 위원: 영상 혹은 뮤지컬 등 다른 저작물의 '삽니다' 게시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적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삽니다' 자체에 대해 심의한 사례는 없으며, 실제 그에 응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까지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심의한 사례가 있음.

- C 위원: 시정명령에 대한 저작권법 제133조의2를 보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등'이라고 하고 있음. 그리고 시정권고에 대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삽니다' 게시물은 비록 일회성 거래라고 해도 합법적인 저작물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제재의 정도도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대상은 보호원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니터링되는 것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이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임.
- D 위원: 문제점은 해당 게시물은 현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임. '팝니다' 게시물의 경우 이미 불법복제물은 존재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큼. 이에 비해 '삽니다'는 비록 불법복제물 거래를 유도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임.
- E 위원: 저도 D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사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전송 여부'가 불명확해서인가? 그렇다면 같은 사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했으면 함.

- 오진해 전문위원: 사실 '샵니다' 게시물에 대해 실제 거래, 즉 불법복제물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확인할 수 없음.
- F 위원: 저도 가결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임. 지금까지 판매게시물에 대하여 심의하여 왔는데, 이 때도 실제 거래사실보다는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의결하여 왔음. 실제 판매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의 특성과 거래환경, 거래빈도,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상황을 그대로 두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방치되거나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권고를 의결해 왔다고 봄. 구매희망 게시물의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함. '샵니다' 게시물을 통한 거래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본건 3건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이런 일이 더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경고의 시정권고 정도는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G 위원: 구매희망 게시물의 경우 이미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 상황인 판매게시물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가 미수 내지 미완성에 그친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적·전문적인 판매게시물에 비해 구매희망게시물은 대부분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위법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로서 제재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H 위원: 저 자체가 완결된 위법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반대 입장

임. 보호원에서 저 정도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E 위원: “불법복제물등”의 정의에서 ‘침해하는’이라고 하고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도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 I 위원: 코로나19 시국에 PDF가 사실상 정착이 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임. 다만 구매희망 게시물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위법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보아 제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처럼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여 미리 처벌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음. 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례가 충분히 누적된다면 달리 볼 여지는 있을 것임.
- 김경숙 심의위원장: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 의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김경숙 심의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8874호~1887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가결 6인: F 위원, A 위원, J 위원, K 위원, L 위원, M 위원 / 부결 6인: I 위원, D 위원, H 위원, B 위원, E 위원, G 위원)

o 의결안전 제2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개정안을 재정비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건은 부결함.”

5. 폐회 선언

○ 김경숙 심의위원장이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26.

위원장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권현영

위원 강태욱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홍지만